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생활물류 쉼터가 종사자 휴식, 운송수단 정비 등 그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생활물류 쉼터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7. 09. ~ 08. 19.) 결과, 특기할 사항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생활물류 센터 설치·관리 기준(제11조제4항 관련)

1. 거점형 센터

구분	기준
가. 입지조건	1) 생활물류 센터의 적절한 분포와 접근성,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동 편의를 위해 되도록 지상 저층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규모	거점형 센터의 최소 연면적은 165제곱미터로 한다.
다. 구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 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라. 시설	1) 휴게시설 가)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면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온도(18℃ ~ 28℃)와 적절한 습도(권고수준: 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및 습도 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라)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화장실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3) 교육실 교통안전 교육, 차량 자가 정비 교육 등이 가능한 교육 시설, 강의 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운송수단 정비 시설 이륜차 및 차량 자가 정비비를 위한 공용 공구를 갖추어야 한다.

	5) 주차시설 가) 이용규모를 고려하여 이용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주차장 내에 센터가 위치한 경우 주차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여성휴게실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불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소방시설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설비를 비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물품창고 센터 운영·관리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운영·관리 기준	1) 운영시간 법정공휴일과 선거일 및 센터가 정하는 정기휴관일을 제외하고 월~토 주 6일, 10:00부터 21: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개별 특성과 예산·인력의 허용 범위 내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2) 청소 및 시설 관리 센터의 청소·관리 등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조명 및 소음 관리 휴식에 방해되지 않는 적절한 밝기(권고수준: 100Lux ~ 200Lux)와 소음수준(권고수준: 50dB 이하)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이용자 출입관리 이용자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전자화된 출입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간이형 쉼터

구분	기준
가. 입지조건	1) 생활물류 쉼터의 적절한 분포와 접근성,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동 편의를 위해 되도록 지상 저층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규모	간이형 쉼터의 최소 연면적은 26제곱미터로 한다.
다. 구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 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라. 시설	1) 휴게시설 가)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면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온도(18℃ ~ 28℃)와 적절한 습도(권고수준: 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및 습도 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라)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화장실 가)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쉼터 300미터 이내에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주차시설 가) 이용규모를 고려하여 이용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주차장 내에 쉼터가 위치한 경우 주차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소방시설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설비를 비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운영·관리 기준	1) 운영시간 법정공휴일과 선거일 및 쉼터가 정하는 정기휴관일을 제외하고 월~토 주 6일, 10:00부터 21: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쉼터의 개별 특성과 예산·인력의 허용 범위 내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2) 청소 및 시설 관리 쉼터의 청소·관리 등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조명 및 소음 관리 휴식에 방해되지 않는 적절한 밝기(권고수준: 100Lux ~ 200Lux)와 소음수준(권고수준: 50dB 이하)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이용자 출입관리 이용자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전자화된 출입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비고 :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간이형 쉼터에 설치를 권고한다.

1. 여성휴게실 :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불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함
2. 경정비 시설 : 이륜차 및 차량 자가 경정비를 위한 공용 공구 비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생활물류 쉽터의 기능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1조(생활물류 쉽터의 기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생활물류 쉽터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u>